〈KITA무역진흥자금 신청서 작성요령〉

- ① 무역업고유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②회사명 ③대표자 ④주소는 무역협회 회원DB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표시되고 있음. (단,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입력 가능)
 - ※ ①,②,③,④항은 소중한 회원정보이므로 변동이 있는 경우, 별도로 변경 신청(☎1566-5114)
- ⑧ 주요수출국가, 주요수출품목이 다수일 경우에는 5개 이내를 입력
- ⑨ 전년도 재무제표의 총매출금액 및 ⑩ 납입 자본금을 입력
- ⑪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인원수 및 ⑫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도를 입력
- ③ 융자신청 및 수출내용 상담이 가능한 담당(책임)자를 입력
 - ※ 융자추천서를 전자팩스 및 이메일로 발급하므로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

- ⑭ 수출실적은 직수출, 로컬 등 기타수출로 구분하여 입력
 - o 직수출실적은 우리협회 수출실적 DB에서 집계한 통관기준 실적(자동입력)
 - o 로컬 등 기타수출은 실적을 직접 입력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 첨부 (거래 은행 및 KT.net)
- (b) 현재보유 L/C (6) 계약금액(선택사항)
 - o 수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신규가입업체 및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선적, 계약금액 등을 한도산정에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선택사항
 - o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자 명의의 Master L/C, Local L/C등의 금액과 수출이 전제된 D/A, D/P등 외화로 표시된 수출관련 계약서 및 물품공급 계약서 등
- ② 수상경력, 기술관련사항, 국내외특허, 인증서(가점사항)
 - o 최근 3년 이내의 표창, 인증서, 특허증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해당 증빙서 사본을 첨부
 - 수상경력은 정부로부터 받은 장관급(무역협회 회장 포함) 이상의 표창이 해당
 - 기술관련 사항은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유망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인증서
 - 국내외 특허권, 실용신안, 의장등록 및 해외유명규격(ISO, UL, CE 등)의 인증서
 - ※ 신청서 하단의『저장』버튼클릭 시, 첨부파일 업로드 화면으로 연결 (신청 마감일까지 수정 가능)

- ⑧ 자금용도는 수출마케팅을 위한 자금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중 선택
 - o 신청한도 내에서 자금신청액 기재 (최종 추천서 기재 금액은 심사를 통해 변경 가능)
 - 0 융자희망은행은 자금을 실행받고자 하는 은행과 지점명칭을 입력함
 - o 보증서, 부동산 등 융자희망은행에 제공할 **담보 종류가 사전 협의**된 경우에 체크
- ⑩ 자금사용계획에는 행사명 및 구매 원자재 종류, 항목별 소요비용 등을 상세히 기재

끝.